



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

1 깨끗한 전파이용환경 조성

-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
- 전파감시(Radio Spectrum Monitoring)
-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 전파교란 대응 및 전파혼신 처리
- 국내·외 위성전파감시 및 국내 위성망 보호

2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 무선국 허가·검사
- 방송국 검사
- 통신사업자 등록·신고
- 정보통신방송 분야 비영리법인 허가
- 전파차단장치 제조·수입 등 인가 및 사용신고
-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

3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단속
- 불법감청설비 조사·단속
- 전기통신설비 제공 감독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 방송편성비율 확인
-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기준 준수 관리

4 전파 이용 촉진

-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
- 전파혼신 조사
- TV 수신환경 조사
- 전파환경 측정 서비스
- 위성 전파환경 조사

5 국제 교류 협력

- 인접국간 전파관리 협력
- 국제 표준화 활동
- 전파관리 분야 국제교류
-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6 전파 교육 및 연구 지원

- 어린이 전파교실 개최
- 위성전파 측정 정보 제공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지켜줄게!



중앙전파관리소

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
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 : emsit.go.kr

민원상담 : 080-700-0074
02-3400-2000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중앙전파관리소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02-3400-2000
위성전파감시센터	(1741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	031-644-5900
서울전파관리소	(08249)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02-2680-1700
-서울북부사무소	(1160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031-849-5800
-여의도지역사무소	(07235)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704호	02-761-2840
부산전파관리소	(46703)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051-974-5100
광주전파관리소	(58214)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00
-광주지역사무소	(61945) 광주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2층	062-651-2604
강릉전파관리소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980
-원주지역사무소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9층	033-660-2974
-속초지역사무소	(24869) 강원도 속초시 청대마을길 6호	033-633-2961
대전전파관리소	(35283)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042-520-4100
-당진사무소	(31754)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041-360-2800
대구전파관리소	(42043)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00
전주전파관리소	(55316)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제주전파관리소	(63037) 제주도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00
-제주지역사무소	(63220) 제주도 청사로 59, 244호	064-728-6501
청주전파관리소	(2856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	043-261-5811
울산전파관리소	(45013)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0

crms.go.kr

대한민국 전파·방송통신의 중심!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허가·신고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허가·신고하고 사용합시다.

무선국이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무선설비와 운용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무선국이라 합니다. (방송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무선국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할 경우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에게 혼신을 주는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 또는 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선국 재허가

허가받은 무선국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국 허가·신고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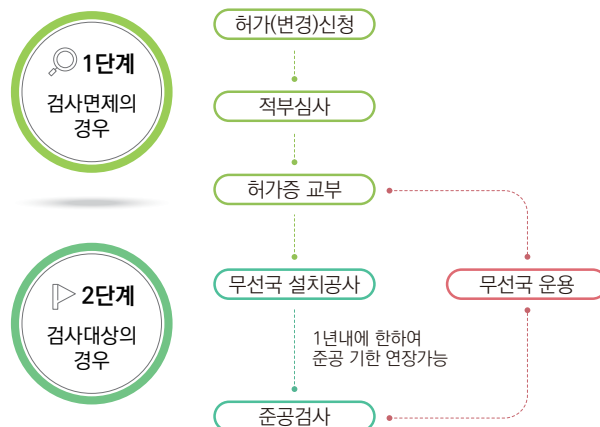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간이무선국 중 휴대용 무선기기, 이동국,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차량, 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적합성 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무선랜, 무선전화기, 무선도난 경보기, 완구 조정기 등

무선국 허가(변경) 절차 흐름도



무선국 폐지 및 운용 휴지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면 반드시 관할 전파관리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불법무선국을 운용하지 맙시다.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벗어나 운용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무선국(무선기기) 사용 사례

① 국내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외국산 생활무선국 사용

- 주파수, 출력 등이 국내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해외 직구 등의 외국산 생활무선국 사용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적합성 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은 허가·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생활무선국은 확장(불법)주파수 사용 및 출력증강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 400MHz 대역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은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허용합니다.
- 차량용 고정형 무전기는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700MHz(740~752MHz) 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마이크는 유예기간 종료('20. 12. 31.) 이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700MHz, 170MHz, 200MHz, 900MHz 대역 등의 무선마이크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③ 불법 아날로그(디지털·아날로그 겸용) 무전기 사용

- '19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디지털·아날로그 겸용) 무전기는 신규로 개설할 수 없으며, 허가(신고)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 '18년 말까지 재허가(신고)를 받은 무전기는 수명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옥외용 레벨측정레이다 불법 설치 운용

- 옥외용 레벨측정레이다 대역 (76~81GHz)이 아닌 5GHz, 9GHz, 26GHz 등의 주파수 대역(차폐된 옥내용으로만 사용 가능)을 사용하는 옥외용 레벨측정레이다 설치·운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다만, 예산 및 대체장비 확보가 어려워 즉시 사용중지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년 8월 31일까지 유예하오니 해당시설을 설치 운용중인 기관(업체)은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자진철거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을 받은 적법한 제품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내 전파 혼간섭 또는 전파파해로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무선국 허가·신고 상담 및 신청

☎ 080-700-0074(무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 cms.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emsit.go.kr
전파 · 방송통신민원 : 080-700-0074